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9. 1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1. 9.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조 한 영

가.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1년 3월 28일 법률제6443호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보존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어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과세연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8월 3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구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이첩 시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임.

<개정내용>

○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9. 7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2001년 3월 28일 법률제6443호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보존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있어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제2항)

3. 근거법령

가. 지방세법(2001. 4. 7 법률 제6460호) 제7조 내지 제9조

나. 지방세법시행규칙(2001.4.17, 행정자치부령 제133호) 제2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필요성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01.8.16 ~ 9. 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함. (서울시 세정13400-796, 2001. 8. 3)

다. 2001. 9. 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u>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3.(생략)</p> <p><u>< 신설 ></u></p>	<p><u>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u> — ----- ----- --.</p> <p>1.~ 3.(현행과 같음)</p> <p><u>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u> <u>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u> <u>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u> <u>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u> <u>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